

별채 주택 (ADU) 전환

기존 건축 허가를 받은 단독 주택 또는 R-1 (단독 주택) 구역의 건물을 새로운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기존 주택에 연결 또는 분리되어 지어지는 신규 별채 주택 (ADU)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2층 건물에 이어서 증축된 창고와 같은 구조물은 별채 주택 (ADU)으로 전환 할 수 없습니다. 시에 접수하는 신규 별채 주택 (ADU)은 가든 그로브 시 규정 타이틀 9의 섹션 9.08.20.050 및 캘리포니아 건축법과 다음 사항들의 개발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
- **건축 허가 증빙:** 부동산 소유주는 전환할 공간에 대한 건축 허가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**주차:** 별채 주택 (ADU)에 추가 주차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만약에 차고를 전환할 시에는 주 건물에 필요한 주차 공간을 소유지 안에서 공간을 대체해야 합니다. 대체 용 주차 공간은 개방형 주차 공간으로 설계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본 건물의 침실 수에 따라 적용되는 필요한 총 주차 공간의 수 입니다.

침실 개수 1-4: 4대의 주차공간

침실 개수 5-7: 6대의 주차공간

침실 개수 8 이상: 8대의 주차공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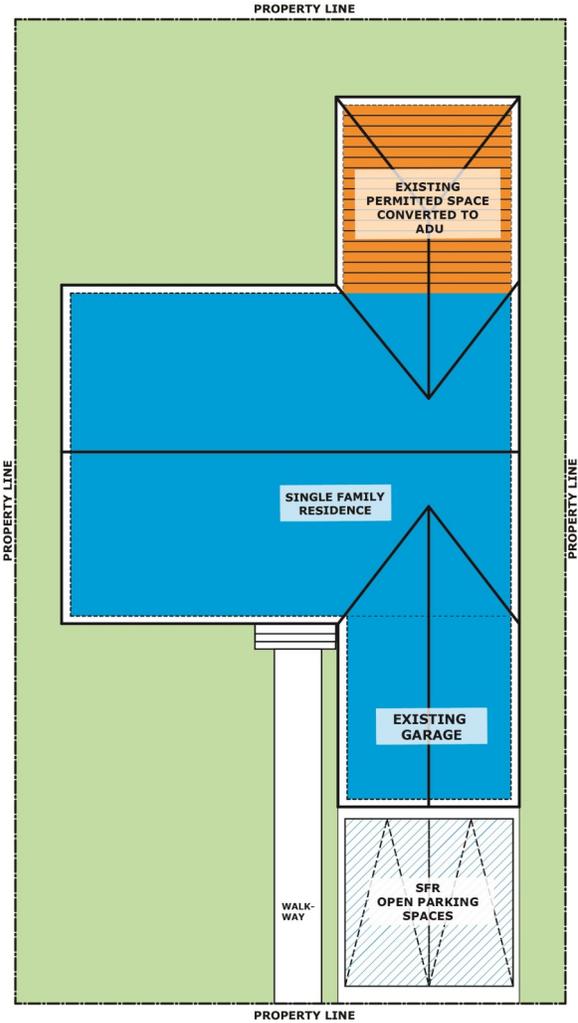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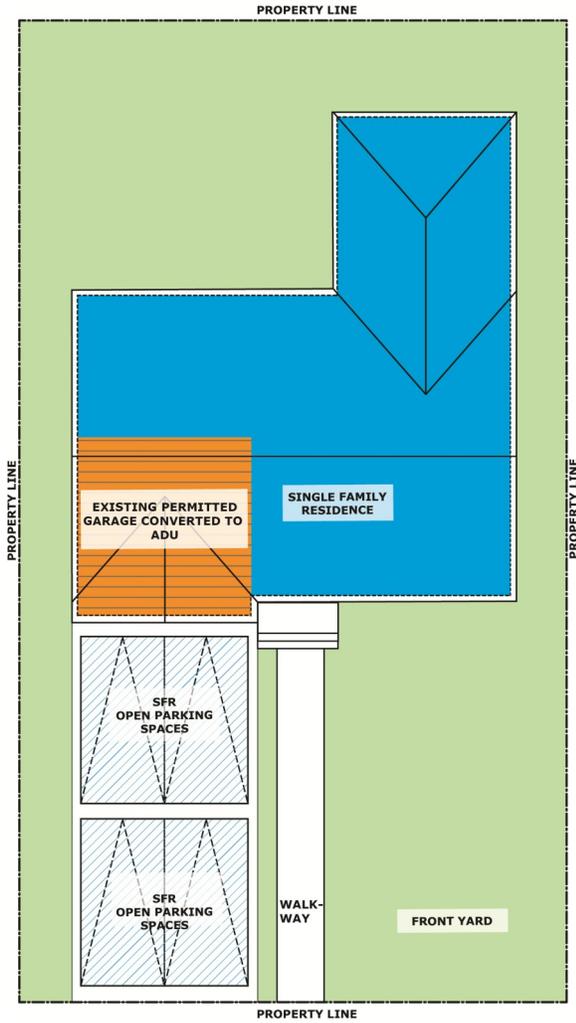
- **최소 유닛 크기:** 최소 크기는 캘리포니아 주거법 (CRC, California Residential Code)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**건축법 요구 사항:** 모든 제안 된 별채 주택 (ADU)전환은 캘리포니아 주거법 (CRC)을 포함한 배관법, 기계 역학법, 에너지법, 캘리포니아 그린 빌딩 표준법 및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 개조를 위해 고려해야 할 건물 관련 항목의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:

- ◆ 습기 장벽
- ◆ 단열재
- ◆ 화재 분리
- ◆ 부속 패널
- ◆ 난방
- ◆ 출구
- ◆ 조명 및 환기
- ◆ P배관
- ◆ 지붕 / 천장
- ◆ 화재 스프링클러 (적용)
- ◆ 전기, 배선, GFI 전기 아울

- 별채 주택 (ADU) 승인을 얻으려면 부동산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에 본채나 별채에 항시 거주해야 합니다.
- 별채 주택 (ADU)은 본채에 연결된 동일한 유틸리티 계량기로 서비스해야 하며, 별도의 유틸리티 계량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
별채형 주거 시설(ADU) 변환 예

붙여진 별채형 주거 시설 (ADU) 변환



분리 된 별채형 주거 시설 (ADU) 변환

